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홍근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4678 발의연월일: 2020. 10. 27.

발 의 자: 박홍근・양향자・정일영

조승래 · 김수흥 · 양경숙

이형석 · 강선우 · 우워식

허 영 의원(10인)

제안이유

현행법은 특정 연도에 발생한 법인의 결손금을 이후 10년간 각 사업연도 소득의 60%를 한도로 공제를 허용하고 있는데, 이를 이월결손금 공제제도라 함.

우리는 세수 증대 등의 목적으로 이월결손금 공제 한도를 신설하여 점차적으로 줄여오고 있는 반면 미국이나 독일, 프랑스 등 주요국의 경우 공제한도가 없거나, 한도가 있다고 하여도 일반적으로 이월공제 기간에 제한을 두고 있지 않거나 우리보다 더 장기간인 상황임. 이에 국내 기업의 경쟁력이 약화될 뿐 아니라 코로나19 장기화로 기업의 경영환경이 극도로 악화됨에 따라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긴요한 실정임.

이에 공제기간을 15년으로 확대하고, 현행법에 따라 아직 공제되지 않은 결손금에도 소급적용하여 과거부터 결손이 누적된 기업이 코로

나19로 인해 악화된 경영환경으로 누적된 적자를 충분히 털지 못한 채 이월공제가 소멸하는 상황을 막고 코로나19 이후에 이익이 발생했을 때 공제받을 수 있도록 기업의 위기 극복을 지원하고자 함.

주요내용

과세표준 및 연결과세표준 산정 시 결손금의 이월공제기간을 사업연도 개시일 전 '10년 이내'에서 '15년 이내'로 확대함(안 제13조제1항 및 제76조의13제1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2021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 법률 제 호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인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1호가목 중 "10년"을 "15년"으로 한다. 제76조의13제1항제1호 중 "10년"을 "15년"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월결손금 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제1항 및 제76조의13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0년 12월 3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발생분부터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3조(과세표준) ① 내국법인의	제13조(과세표준) ①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	
인세의 과세표준은 각 사업연	
도의 소득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과 소득을 차례로 공	
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제1	
호의 금액에 대한 공제는 각	
사업연도 소득의 100분의 60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제1	
항에 따른 중소기업(이하 "중	
소기업"이라 한다)과 회생계획	
을 이행 중인 기업 등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법인의 경우는	
100분의 100]을 한도로 한다.	
1. 제14조제3항의 이월결손금	1
중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금액	
가. 각 사업연도의 개시일 전	가
<u>10년</u> 이내에 개시한 사업	<u>15년</u>
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일	
것	
나. (생 략)	나. (현행과 같음)
2. · 3. (생 략)	2. • 3.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76조의13(연결과세표준) ①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은 각 연결사업연도
소득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을 차례로 공제한 금
액으로 한다. 다만, 제1호의 금
액에 대한 공제는 제3항제1호
에 따른 연결소득 개별귀속액
의 100분의 60(중소기업과 회
생계획을 이행 중인 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결법인
의 경우는 100분의 100)을 한
도로 한다.
1. 각 연결사업연도의 개시일
저 10년 이내에 개시하 여겨

- 1. 각 연결사업연도의 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개시한 연결 사업연도의 결손금(연결법인 의 연결납세방식의 적용 전에 발생한 결손금을 포함한다)으로서 그 후의 각 연결사업연도(사업연도를 포함한다)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
- 2. 3. (생략)
- ② ~ ④ (생 략)

세76조의13(연결과세표준) ①	
1	
<u>15년</u>	
2.・3. (현행과 같음)	
② ~ ④ (현행과 같음)	